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7895(본소), 2020가단236835(반소) 판결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 종결 2020. 6. 4

판결 선고 2020. 7.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36,170원 및 그중가. 4,415,37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나. 64,99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다. 1,355,810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각 2020 .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구상금 채무

4,415,37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2018. 1. 31.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빌딩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 들어 C를 향해 던져 그 입간판이 도로바닥에 부딪힌 후 C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는 특수상해죄의 범 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375호로 기소되어 201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835호로 'C, C의 일행인 D,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사실오인), 주차금지 입 간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법리오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 거워서부당하다(양형부당)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2. 6. 'C와 D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주차금지 입간판을 C를 향해 던졌으며, 그 순간 C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믿을 만하고, 주차금지 입간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대법원 2019도1916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0. 2.2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차 입간판을 집어 들어 C를 향해 던져 그 입간판이 도로바닥에 부딪힌 후 C의 다리 부위에 맞아 C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C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C가 2018. 1. 31.부터 2019. 11. 8.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D 2018. 3. 19.부터 2018. 12. 31.까지 4,415,370원을, ② 2018. 11. 19. 및 2018. 12. 14. 64,990원을, ③ 2019. 11. 27.부터 2020. 1. 14.까지 1,355,8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공단부담금 상당액인 5,836,170원(= 4,415,370원 + 64,990원 + 1,355,810원) 및 그중 4,415,37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1. 부터, 64, 99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15.부터, 1,355,81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요양급여 상당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원고의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반효림

1)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와 C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기)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7440(2019머61149)]의 조 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C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손해발생에 피해자 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 액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